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0020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0.02.1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6.11.

(sweethongkongcafe.com)

# [홍콩다방]

## 정 보 공 개 서

(주)홍콩다방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 홍콩다방코리아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 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57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070-4032-531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 02-2675-0333 [가맹사업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 070-4032-5310

- 1 -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 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 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 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홍콩다방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57				
(太) きって はっ コ ()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팩스번호	
㈜홍콩다방코리아	2020.12.02	2020.12.07	김원화	070-4032-5310	02-2675-0333	
	법인등록번호	110111-7702817	사업자등록번호	889-87-02061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김원화 /	홍콩다방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57			
대표이사	(주)홍콩다방코리아	504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원화	070-4032-5310	02-2675-0333	
		영업표지	주소			
사내이사	백은주 / 산방에프앤비(주)	홍콩다방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57			
74 = 11 5 1 7 1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원화	070-4032-5310	02-2675-0333	
		영업표지	주소			
411110141	모해란 /		경기도 김포	시 대곶면 율마	로135번길 57	
사내이사	(주)홍콩다방코리아	홍콩다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원화	070-4032-5310	02-2675-0333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홍콩다방	홍콩다방	2020.12.0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2, 1층(성산동)	김원화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홍콩다방]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홍콩다방	-
상 호	홍콩다방 00점	-
상표(서비스표)	香港茶房 ・ ・ ・ ・ ・ ・ ・ ・ ・ ・ ・ ・ ・	30류 출원번호: 4020190145100 출월일자: 2019.09.20. 등록번호: 4016528630000 등록일자: 2020.10.16 35류 출원번호: 4020190145102 출월일자: 2019.09.20. 등록번호: 4016528720000 등록일자: 2020.10.16 43류 출원번호: 4020190145105 출월일자: 2019.09.20. 등록번호: 4016528750000 등록일자: 2020.10.16
광 고	_	-
그 밖의 영업표지	_	_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87,030	134,253	52,776	1,059,688	-13,361	1,769
2023년	269,603	319,816	-50,212	1,033,905	-99,172	-102,988
2024년	400,964	395,646	5,318	1,269,227	65,275	55,531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위 1)의 재무상황 요약 자료상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맹사업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ИB	(기존 직위)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김원화	대표이사	2020.12.02.~2021.11.17	(주)홍콩다방코리아의	가맹사업 총괄		
		GITT OT AT	2020.12.02. 2021.11.17	대표이사	710/118 82		
	김원화	사내이사	2021.11.17.~현재	(주)홍콩다방코리아의	가맹사업		
	급전외	AFGIOIAF	2021.11.17.~연제	사내이사	경영관리		
가맹사업	김원화	대표이사	2025.02.21.~현재	㈜홍콩다방코리아의	가맹사업 총괄		
관련 임원	급전외	내표이자	2023.02.21.~연제	대표이사	가장사립 중절		
	백은주	사내이사	2025.02.21.~현재	㈜홍콩다방코리아의	가맹사업 관리		
70		NIGIN	2025.02.21.° \(\frac{1}{2}\)	사내이사	기정시由 친디		
	모해란	사내이사	2025 02 21청Ⅱ	㈜홍콩다방코리아의	기대 시어 카기		
	포매딘	사내에사	2025.02.21.~현재	사내이사	가맹사업 관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누(명)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월	3	_	U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홍콩다방] 이외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가맹 본부의 사용기간)
홍콩다방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를 제공하고 대가 를 수령할 권리	30류 출원일자: 2019.09.20. 등록일자: 2020.10.16	30류 출원번호: 4020190145100 등록번호: 4016528630000	김원화	30류/35류/ 43류 2030.10.16 (가맹본부 사용기간 동일)



35류	35류	
출원일자:	출원번호:	
2019.09.20.	4020190145102	
등록일자:	등록번호:	
2020.10.16	4016528720000	
43류	43류	
출원일자:	출원번호:	
2019.09.20.	4020190145105	
등록일자:	등록번호:	
2020.10.16	4016528750000	

- ▶ 당사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당사에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가맹사업용 지식재산권이 개인(김원화)으로 출원 및 등록 되었기에 이를 법인사 업자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별도의 상표사용설정승인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a>)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당사의 1호 가맹점은 2015.11.09.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 가맹본부 대표자 개인명의 직영점이 2020.12.02.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재되지 않았기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에 따라서 가맹점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 2. [홍콩다방]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홍콩다방] 가맹사업 시작일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홍콩다방	홍콩다방	김원화	2015.11.09.~ 2020.12.0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2, 1층(성산동)
㈜홍콩다방코리아	홍콩다방	김원화	2020.12.07.~ 2021.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417호(여의도동)
(주)홍콩다방코리아	홍콩다방	윤지환	2021.11.26.~ 2024.0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제7층 제이703호(당산동4가)
(주)홍콩다방코리아	홍콩다방	윤지환	2024.02.07.~ 2024.06.07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57
㈜홍콩다방코리아	홍콩다방	김원화	2025.02.21.~ 현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57

## 3. [홍콩다방]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 = c  u	대분류	소분류			
홍콩다방	음료(커피 외)	밀크티, 홍콩와플			

##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국 및 16개 광역 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개)

TICH	2022.12.31.		2023.12.31.			2024.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9	28	1	18	17	1	11	10	1
서울	13	12	1	8	7	1	6	5	1



부산	_	_	_	-	_	_	-	_	_
대구	2	2	-	1	1	-	-	-	_
인천	1	1	_	_	_	_	_	_	_
광주	2	2	_	1	1	_	-	_	_
대전	1	1	-	-	_	_	-	-	_
울산	_	_	_	-	_	_	_	_	_
세종	_	_	-	-	_	-	-	-	_
경기	4	4	-	4	4	_	1	1	_
강원	-	-	-	-	-	-	-	-	_
충북	1	1	-	1	1	-	1	1	_
충남	1	1	_	-	_	_	-	_	_
전북	1	1	_	1	1	_	1	1	_
전남	_	_	-	-	_	_	-	_	_
경북	1	1	-	1	1	-	1	1	_
경남	2	2	_	1	1	_	1	1	_
제주			_	-	_	_	_	_	_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홍콩다방]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2년	28	9	-	9	-	28	-
2023년	28	-	-	11	2	17	-11
2024년	17	-	-	7	-	10	-7

## 6. [홍콩다방]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바로 전 3년간 당사의 영업표지 [홍콩다방] 이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4 <sup>1</sup>	년 가맹점사 <b>역</b>	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기	가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상한		한	하한		비고
	/16B T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연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연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10	90,060	8,656	191,633	79,049	21,473	1,476	-
서울	5	122,997	13,996	191,633	79,049	87,514	6,102	-
부산	_	_	_	_	_	_	_	_



대구	-	-	-	-	-	_	-	-
인천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대전	_	_	-	-	-	_	-	-
울산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
경기	1	해당 없음	5곳 미만					
강원	_	_	-	_	-	_	-	_
충북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충남	_	_	_	_	_	_	_	_
전북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남	_	_	-	-	-	_	-	-
경북	1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남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제주	_	_	_	_	_	_	_	_

- ▶ 당사의 가맹사업 [홍콩다방] 관련 2024.01.01.~2024.12.31.까지 가맹점 수는 총 10곳입니다. 해당 가맹점 전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을 위한 권장 기준인 실제 영업 개월 수 6개월 이상을 충족합니다. 더불어서 지역별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작성 권장 기준 지역별 가맹점 수 5곳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더불어서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로는 가맹점별 포스 매출자료가 사용되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중 가맹점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구체화합니다.(가맹점의 실제 전용 면적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 확보된 면적 정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 물품공급액, 시장현황, 가맹점주의 경영능력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당사가 매출 액 추정에 사용할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귀하가 방문하여 소 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홍콩다방]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홍콩다방]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0	1,138(단위: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출비용(단	간위: 천원, 브	부가세 미포	
구분	수단	기간		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8,007	경기도 ************************************	(비공개)	ाः (धरम)
	소계	-	8,007	경기도 800m30	(비공개)	-
광고	경기도 (Minica do	-	_	_	-	-
9.4	37LE Minima do	-	_	_	-	-
	871E oromano	(비공개)	87/ <u>F</u> (Kanasa)	(비공개)	371E connect	(비공개)
	소계	_		_	_	
판촉	_	-	_	_	_	_
	_	_	_	_	_	_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 예치계좌 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하나은행)	1588-1111

\* 귀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계좌번호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는 경우	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 ② 가맹본부가 가맹금예 치신청서를 은행에 팩스로 발송 → ③ 은행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좌 번호를 휴대폰으로 안내 → ④ 전송 받은 계좌번호로 은행 방문이나 인 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예치	
매장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to$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to$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to$ ④ 가상계좌에 가맹금 예치	-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④ 인터넷뱅킹접속 → ⑤ 가상계좌에 가맹금 이체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현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홍콩다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홍콩다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	1.가입비	2,200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2.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1,100			가맹점 오픈
맹	3.인력지원/매뉴얼 대가	2,200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이후 반환 안됨
Ы	소계	5,500	가맹계약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 육 비	개점 전 교육비	3,300	체결 즉시	교육 실시 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실시 이후 반환 안됨
총계		8,800		-	-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มอ
보증금	3,000	계약 체결 당일	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1,8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5,500
개점 전 최초교육비	3,3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합계	11,8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49.5㎡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불 가사유	비고
인테리어	미 지정 (협력업체 선정 중)	36,000	2,400	- 계약시: 50 % - 중도금: 30 % - 완료시: 20 %	공사 전 계약취소	공사 후	-
주방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25,000	1,666	- 구입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포스, 키오스크 별도
가구	미 지정 (협력업체 선정 중)	5,500	_	- 구입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
외부간판 및 내부 싸인물	미 지정 (협력업체 선정 중)	5,500	_	- 구입시: 100%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후	-



초도물품비	협력업체	_	-	-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오픈을 위한 최초 공급물품 비용
총계	_	72,000	-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장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홍콩다방]의 컨셉트에 맞도록 시공하며, 영업장의 실측된 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을 준비하여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등의 사용과 기획관리 명목으로 ₩5,500,000(부가세포함)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별도사항

철거, 전기증설, 외부공사, 냉난방기, POS / 음향기기, 화장실, 어닝 등

#### ※ 유의사항

-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시공사항이므로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 등에 유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 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8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
가맹희망자 또는	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언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
가맹점 사업자	는 있으며 당사에 점포물색을 의뢰시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선정이 완료되어 귀하가 입지 선정의 주체가 됩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이상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홍콩다방]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한 내역은 첨부한 목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총계	_	_	-	-	_	-
로열티	가맹본부	월 33만원 (부가세 포함, 1년 치 선납)	가맹계약 해당 월(매년)	-	영업지도 및 브 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소멸성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
인테리어,시설,	미 지정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좌동	좌동	교체 후	-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 체 선정 중)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_	-

<sup>※</sup>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2)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당사의 가맹사업 [홍콩다방] 관련 2024.01.01.~2024.12.31.까지 가맹점 수는 총 10곳입니다. 해당 가맹점 전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액가맹금 산정 권장 기준 실제 영업 개월수 6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가맹점 운영과 연관된 중요 필수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3자 물류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이름을 통한 직접적인 중간유통 수익구조가 없기에 차액가맹금 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 확장 정도에 따라서 관련 내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 3)가맹점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 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 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 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 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내 용	빈도/시기	담당팀	비고
-------------	-----	-------	-----	----



운영관리	-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가맹점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 - 운영방법 및 계획 파악을 위한 면담 및 자료요청 권리	1회/월	수퍼바이져 /당사의 임직원 수퍼바이져 /당사의 임직원	
회계관리	- 회계장부(포스)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회/월	수퍼바이져 /당사의 임직원	
레시피관리	- S/V 또는 M/V를 통한 매장의 균일한 레 시피 관리	1회/월	수퍼바이져 /당사의 임직원	문의: 가맹본부
시설관리	- BI적용 및 낙후 시설 개선 요구의 권리	1회/월	수퍼바이져 /당사의 임직원	
위생관리	-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 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1회/월	수퍼바이져 /당상의 임직원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8조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수 경우 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겨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 가. 잔여 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b>금액</b> (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중 인력지원 및 매뉴얼 제공 대가	2,750	부가세 포함
교육비	1,65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해당 없음

## 나. 신규 계약 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b>금액</b> (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해당 없음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 33 ] 쪽에 나와 있습니다.

#### 4)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5)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홍콩다방]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홍콩다방]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홍보매뉴얼, 전산 및 매장관리솔루션,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라.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마.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귀하가 [홍콩다방]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홍콩다방]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_	-	해당 없음	2024년 기준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당사는 [홍콩다방]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요구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2)당사가 [홍콩다방]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 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_	_	-	_	-	2024년 기준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까이딴자이 초코까이딴자이 옥수수까이딴자이 고구마까이딴자이 치즈까이딴자이 카라멜빈까이딴자이 란퐁유엔 스타킹밀크티 동윤영 동링차	<b>제한내용 및 조건</b> 왼쪽에 기재된 상품 및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위반시 책임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 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 구 후 계약 해지	<b>비고</b> 가 맹 사 업 법 의 해지 절 차 준용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1회 위반 : 구두경고
다른 가맹점 사업자	지정업체로부 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 • 용역명	<b>권장가격</b>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까이딴자이	4,000		
초코까이딴자이	4,800		
옥수수까이딴자이	4,800		
고구마까이딴자이	4,800		
치즈까이딴자이	5,200		
카라멜빈까이딴자이	4,800		
란퐁유엔	5,000		
스타킹밀크티	5,000		
동윤영	5,500	₩ > 1	001017
동링차	5,500	변경시	2019년
아메리카노	3,500	월별통보	12월 기준
카페라떼	4,800		
카페모카	4,800		
바닐라라떼	4,800		
카라멜마끼야또	4,800		
복숭아아이스티	4,500		
레몬에이드	5,000		
자몽에이드	5,000		
청포도에이드	5,000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을인 집중 꿈게	가맹본부	계열회사	
밀크티와 홍콩와플을 전문으로 하는 동종의 업	SWEET HONG KONG CAFE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반경 0.3km or 인구밀도에 따른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원형 혹은 다각형으로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ol> <li>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 의 → 영업지역 변경 완 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 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 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홍 콩다방]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 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홍콩다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	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74%	2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 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가맹점과 직영점의 전반적인 판매상품은 동일하나 10%는 가맹점	0%
	전용 판매상품 허용)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기간

[홍콩다방]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갱신 시에는 계약이 **2년씩**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 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다만,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되며 갱신비가 발생함)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
	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Ε.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
	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
	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을 하지 못한 경우	제35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 외합니다.)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6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 우	6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24조 3항 / 25조 1항	36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	25조 1항	30소 1항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3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4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 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5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 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5조,30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14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2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 이 거부하는 경우	33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4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4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0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4조, 19조, 25 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 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6조 1항

##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36조 3항 각호



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을'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 우
-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다. 당사/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36조 2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 치하는 경우	36조 4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가.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 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라.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 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



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 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 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 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 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 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밀크티와 홍콩와플을 전문으로 하는 동종의 업	해당 없음	문의 : 당사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홍콩다방"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어지가	여어이스
영입시간	81일수



협의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 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맹 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주문→친절도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1회/2주	본사 운영팀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품질확인→관리표작성→가맹점사업 자 확인 및 서명→완료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가맹점방문기 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 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교다 H 커	부담비율		ㅂ디저뒤	비고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0177	
	브랜드광고	50%	50%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전국광고(TV,라디	
전국광고	서비스/상품광고	3070	(전체가맹점)	통해 제시	오, 5대 일간지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등)	
지역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가맹점 의 행사 참여 결정→행 사 시행→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 차를 거친 후 전 체 가맹점 사업자 의 70%이상의 동 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 동적 (2019년 자 료 없음)	상동	상동	-	

※ 2022년 07월 0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광고 100분의 50 / 판촉행사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지, 카다로그, 쿠폰 등의제작은 [홍콩다방]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 니다.

## 11.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 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 2) 귀하가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가 본 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당사의 과실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해지하 거나, 점포 양도 등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 액으로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0일 내외	80,8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
사업 설명·상담	<ul><li>가맹희망자 상담</li><li>정보공개서 제공</li><li>가맹계약서 제공</li><li>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li></ul>	약 15일	-
면접	-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	7 102	_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 입지 주위 1차 시장조사		_
최종 협의	- 개점 승인 / - 계약서 제공		_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1부는 당사 보관		-
가맹금 예치	- 은행에 가맹금(계약금) 입금		8,800
가맹점 입주건물확정	- 입주 계약		_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간판/기기/ 물품 구입	- 공사 실시(10평일 경우)	약 25일	72,000
인력 배치	<u> </u>		_
교육 실시	- 사전 입문교육 실시		_
홍보 실시	- 가맹점 오픈 전 홍보		_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_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



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되는 실비 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 다.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상의 소요금액은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오디오 구입비용은 별도입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비	ㅇ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ㅇ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리어	용	또는 이전을 수	용 청구(공사계약서	일로부터 3년 이	
등의 노후화가	ㅇ인테리어 공	반하지 않는 점	등 공사비용을 증빙	내에 가맹본부의	
객관적으로 인	사비용(장비·집	포환경개선 :	할 수 있는 서류 첨	책임 없는 사유	
정되는 경우	기의 교체비용	20%	부) → 90일 이내에	로 계약이 종료	
ㅇ위생이나 안	을 제외한 실내	ㅇ점포의 확장	가맹본부 부담액을	(계약의 해지·영	
전의 결함으로	건축공사에 소	또는 이전을 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	업양도 포함)되는	
인하여 가맹사	요되는 일체의	반하는 점포환경	급	경우 가맹본부	
업의 통일성을	비용. 단, 가맹	개선 : 40%	(단, 가맹본부와 가	부담액 중 잔여	
유지하기 어렵	사업의 통일성		맹점사업자간 별도의	기간에 비례하는	
거나 정상적인	과 무관하게 가		합의가 있는 경우 1	부담액은 지급하	
영업에 현저한	맹 점 사 업 자 가		년의 범위 내에서 분	지 아니하거나	_
지장을 주는 경	추가 공사를 실		할지급 가능)	이미 지급한 경	
우	시함에 따라 소		ㅇ가맹점사업자가 가	우에는 환수 가	
	요되는 비용은		맹본부 또는 가맹본	10	
	제외)		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가맹사업 확장 정도에 따라서 해당 내용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_	_	_	_	_
자금지원	_	_	_	_	_
매출부진 경영지원	_	_	_	_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1)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홍콩다방"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	현종류	주요내용	교육생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 개점 직후 교육	가맹점 운영 교육/기능교 육	메뉴 레시피 교육/매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능력 향상 프로그램	가맹점주/ 관리자	이론/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정기교육	운영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가맹점사업자	이론/ 실습교육 (정기)	교육실시 30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교육
비정기교육	특별교육	영업방침 /신메뉴교육	가맹점사업자	이론, 실습교육 (비정기)	교육실시 14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홍콩다방]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	메뉴 레시피 교육	15시간 (3일×5시간)	교육비에 포함	/
개점 직후 교육	가맹점 운영 교육	15시간 (3일×5시간)	파귝니에 <u>도</u> 움	/
	정기교육	3시간	실비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Н	비정기교육	3시간	실비	



####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1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홍콩다방 파르나스몰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지하1층 F-3b(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_	-	_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มอ
3년 9개월(29일)	직영점의 영업 시작일 기준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285,527	직영점 포스(POS) 매출액 기준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70-4032-531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1

##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주)홍콩다방코리아			영업표지 (브랜드)	
피고하이				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제공확인	(작성 란):				
제공일시	년 월	일 일	Ы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 (인)	전화번호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전자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 4) 가맹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별지2

###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주)홍콩다방코리아] 대표 _	(인)
가매히만자: 성명	서명 또는 (이)



별지3

## 정보공개서 수령날짜 및 가맹거래사 자문확인서

		정보공개서를 20 년 :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	
	①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L 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0		l 위하여 가맹거래사( l 자문 확인증 필요)	) 또는 변호사로
	①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u>20</u>	<u>년 월 일</u>	성명 :	인



별지4\_1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5 홍콩다방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50%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